

붙임7**채용서류 반환청구 안내 및 반환청구서 양식**

1. 청구근거 :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~4조
2. 대 상 : 채용 불합격자
3. 반환대상 서류 :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(단, 온라인 접수서류는 해당 없음)
4. 청구방법 : 전자우편 접수(recruit@ketep.re.kr)
* 반환청구서(양식) 작성 후 서명한 스캔 파일(PDF)을 상기 전자우편(이메일) 제출
5. 청구기간 : 최종 합격 여부가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

전형	이의신청 기간
서류전형 결과발표	결과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
필기전형 결과발표	
1차 면접전형 결과발표	
최종 면접전형 결과발표	결과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

6. 반환방법 : 반환 요청 접수 후 14일 이내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을 통해 송부 예정
* 비용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부담

※ (첨부) 반환청구서 양식
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